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사기 행위시 제재처분 강화 〉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2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제220682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사기 행위시 제재처분 강화(안 제66조제1항 제13호카목 신설 등)	3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26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발령한 바 있으며,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2년 136억 원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사기 행위시 제재처분 강화(안 제66조 제1항 제 13호카목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비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 ----- ----- ----- -----, ----- ----- ----- -----제13호카목, 제15호-----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13. -----

현행	개정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u>경우</u>	사. ----- ----- <u>경우(카</u> <u>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아. ~ 차. (생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u><신설></u>	<u>카.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u>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u>
14. ~ 16. (생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자동차정비업은 현행법 제2조¹⁾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

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²⁾

현행법 제57조제1항제3호³⁾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58조제5항⁴⁾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제66조⁵⁾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3)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 ④ (생략)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5)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 12. (생략)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12. 12. 18.>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시 1차시 30일 정지, 2차시 90일 정지, 3차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

구 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사업자)
6.자동차관리 사업자 가. 공통사항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 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법 제66조제1항 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3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다.자동차 정비업자	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 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사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 정비업계 수리비 관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바. 삭제 <2022. 11. 15.>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3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하여 주의 등급의 소비자 정보를 발령한 바도 있으나,⁶⁾ 현행 행정처분기준에 따를 경우 3회 이상의 부정한 금품 수수 등의 위반행위가 있어야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또한 이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⁷⁾ 및

6)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10.11자

7)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⁸⁾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또는 면허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 부정한 금품 수수 등 위반행위 횟수가 3차일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나,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정비업자도 등록 취소토록 규정할 필요 있음.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자가 교통사고 관련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면허·허가를 취소토록 함.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0. (생략)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위 정비를 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수정 법안은 보험금 부정 청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 등록까지 취소하는 것은 정비업자의 이중 처벌로 가혹한 규정임.

문 의 처
02)6788-5582